

2003년에 개정된 식품영업관련 규정

2003년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한 식품영업관련 법령 및 각종 고시를 제·개정함에 따라 본란에서는 식품영업관련 규정의 변동내용을 정리하여 식품영업자에게 각종 규정의 변경사항을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한다.

자료정리 : 편집부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개정공포 (대통령령 제17971호, 2003. 4.)

- 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초로 유전자재조합식품을 수입하거나 개발 또는 생산하는 경우 등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도록 함(영 제3조 신설).
- 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업 및 접객업 등의 영업종류에 집단급 식소(集團給食所)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인 위탁급식영업(委託給食營業)을 추가하여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관리하도록 함(영 제7조제8호마목 신설).
- 다. 수입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종전에 시·도지사에게 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의 신고를 수입식품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담 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하도록 함(영 제13조).

라.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식품등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 등이 위법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함으로써 인체 위해식품등의 제조 또는 판매 등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조정함(영 별표 1 및 별표 2).

(시행일 : 2003. 4. 22.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2월27일부터 시행)

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공포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2003. 8. 18)

- 가. 한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의 제조·가공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 등에 관한 규격의 관리대상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추가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함(제4조제1항).
-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식품등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유통관리대상 식품·식품첨가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에 대한 수입신고를 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은 수입신고인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내역을 통보하도록 함(제11조제11항 및 동조제12항 신설).
- 다.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등의 검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입식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제와 관련하여 사전확인등록의 기준, 신청절차, 등록의 유효기간 및 변경사항의 신고절차 등을 정함(제11조의2 및 별표 6의2).
- 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준수대상 영업자의 범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업소의 지정기준·절차, 지정취소 등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정함(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 신설).
- 마.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식품위생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액을 위반행위별로 정함(제58조의2).

바.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판매 등 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하고, 최근 식품등의 표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경감기준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기준을 일부 조정함(별표 15).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기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1호, 2003. 9. 3)

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의거 위생교육대상자에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및 그 종업원, 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및 그 종업원을, 위생교육기관에 위탁급식영업의 영업자,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또는 위생관리 책임자는 (사)한국식품공업협회로 지정·고시(시행일 : 2003. 9. 9)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 공포 (대통령령 제18164호, 2003. 12. 18)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유통질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주요내용

- 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및 판매하는 영업의 종류를 제조업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과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으로, 수입업은 건강기능식품수입업으로, 판매업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과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으로 정함(안 제2조).
- 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업을 하는 자가 두어야 하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으로 식품기술사 등을 정하고, 그 직무범위를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확보 및 위생관리 등으로 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문기능을 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하

도록 하고, 분과위원회를 두며, 20인이하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하는 등 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 (안 제7조 내지 제15조).

(시행일 : 2003. 12. 18)

2004년도 할당관세 추천
(보건복지부공고2003-119호, 2003. 12. 31)

관세법시행령 제92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소관할당관세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공고하였다.

HS번호	품명	규격	세율(%)	한계수량	추천기관
3302	방향성물질의 혼합물	식품공업용 또는 음료공업용의 것에 한한다. 다만 음료제조용 조제품은 제외한다	5	3천 메트릭톤	한국식품공업협회
3501	카세인·카세인염과기타카세인유도체	커피프리머제조용에 한한다	8	6천2백메트릭톤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기준및규격 중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8호, 2003. 3. 10)-

- 가. 보존료 중 소르빈산칼슘의 규격을 식품공전에 게재함
- 나. 설탕과 건포류 중 이산화황 규격의 자구를 수정함
- 다. 다류 중 침출차에 기타단일침출차 유형을 신설함
- 라. 주류의 총산 시험법을 개정함

마. 식품원료로 진흙버섯, 물개(Harp seal, 단, 해구신 제외), 조식배양삼을 인정함
(시행일 : 2003. 3. 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03-10호, 2003. 3. 14)

특수영양식품 중 영양보충용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 과잉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지용성비타민의 상한수준을 추가.

개정내용

제3. 3. 2) (16) ③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타민, 무기질은 1회 섭취량당 해당 영양소 기준치의 15%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비타민 A와 D는 1일 섭취량으로 계산하였을 때 영양소기준치의 10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섭취대상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경우 그 대상 인구군의 한국인 영양권장량을 기준으로 한다.

(고시 시행일 : 2003. 7. 1.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영업신고를 한 자가 제조·가공·판매 또는 수입하는 식품에 대한 식품의기준및규격은 2004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기준·규격에 의할 수 있다.

식품등의표시기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27호, 2003. 5. 23)

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용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표시예외규정에서 제외함(제6조)

나.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 소재지 표기는 생략하도록 함 (별지 제1호 가목)

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료인 난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계,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시 함유한양과 관계없이 사용된 원료명을 표시하도록 함(별지1 제1호 가목).

라.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표시하는 대상 식품첨가물 중 합성보존료에 소르빈

산칼슘을 추가 함(별지1 제1호가목).

- 마. 영양성분 표시대상에 과자류중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유당면류·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 레토르트식품을 추가함(별지1 제1호가목).
- 바. 유기농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유기농원료의 함량을 상향 조정함(별지1 제1호가목).
- 사. 건강보조식품중 로얄젤리가공식품과 화분가공식품의 표시사항중 알레르기 유발근거가 없는 주의사항을 삭제함(별지1 제2호).
- 아. 기타 식품공전과 상이한 용어를 일치시켜 민원인들의 혼동을 방지함

참고사항

- 경과조치 : 기존의 영업자가 제조·가공·수입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2003. 12. 31일 까지 종전에 규정에 의하도록 함.
- 유예기간 : 영양표시 및 알레르기 함유물질 표기는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유기농원료 상향조정 표기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29호, 2003. 6. 14)**

-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408.에틸셀룰로오스, 409.페로시안화칼륨, 410.페로시안화나트륨, 411.페로시안화칼슘, 천연첨가물중 188.카프릭산, 189.텍스트란 및 190.차카테킨을 신규지정함.
-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화학적합성품중 94.DL-사과산나트륨, 98.산화아연, 111.수용성안나토, 112.스테아린산마그네슘, 215. 제이인산칼슘, 256. 카프론산알릴, 282.DL-페닐알라닌, 300.푸마르산일나트륨, 301.푸마르산제일철, 309. 피로인산나트륨, 319.황산마그네슘, 320.황산아연, 338.염화콜린, 349.L-글루타민산칼륨, 386.규산마그네슘, 392.파라옥시안식향산메틸의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104.소르빈산, 105.소르빈산칼륨, 121.식용색소녹색제3호, 122.식용색소녹색제3호알루미늄레이크, 123.식용색소적색제2호, 124.식용색소적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25.식용색소적색제3호, 126.식용색소적색제40호, 127.식용색소적색제40호알루미늄레이크, 128. 식용색소청색제1호, 129.식용색소청색제1호알루미늄레이크, 130.식용색소 청색제2호, 131.식용색소청색제2호알루미늄레이크, 132.식용색소황색제4호, 133.식용색소황색제4호알루미늄레이크, 134.식용색소황색제5호, 135.식용색소 황색제5호알루미늄레이크,

188.이산화티타늄, 395.식용색소적색제102호, 405.소르빈산칼슘의 사용기준을 개정함.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천연첨가물 중 89.프로테아 제(세균성), 117.차추출물, 160.스모크향 및 175.5'-아데닐산의 정의를 개정 하고, 8. -글루카나아제, 89.프로테아제(세균성), 91.피틴산, 106.트랜스글 루코시다아제, 117.차추출물, 121.헴철 및 160.스모크향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라. 시약 □ 시액 □ 용량분석용표준용액 및 표준용액의 2.시액 중 브롬 브롬화 □ 시액의 제조방법을 개정하고 주석산철시액을 신설함.
 (시행일 : 2003. 6. 14)

캥거루, 오소리, 뉴트리아 동물성 식품원료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3호, 2003. 7. 1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성 원료를 식품원료로 확대하기 위하여 오소리, 뉴트리아, 캥거루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의기준및규격을 고시

- 오소리, 뉴트리아는 최근 농림부령 제1441(2003. 7. 12)호로 공포한 “가축외동물 및 그식육위생검사규칙”에 따라 도축한 식육이어야 하며,
- 캥거루는 수출국의 정부(연방)가 발행한 건강증명서 및 CITES(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미지정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하였다.
 (시행일 : 2003. 7. 14)

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8호, 2003. 9. 1)

식품 부원료중 “카스카라사그라다(Rhamnus purshiana De canddle)”를 삭제.
 (사용부위 : 수피)
 (시행일 : 2003. 9. 1, 고시 시행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원료)은 2004. 2. 29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유전자재조합식품·식품첨가물 안전성평가자료심사지침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7호, 2003. 9. 1)**

-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 대상을 규정함
- 나.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신청 및 심사방법, 심사의뢰시 유의사항, 자료의 보완 등 심사절차를 명확히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다.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전성 평가 심사시 제출자료의 범위를 규정하여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안전성평가를 유도함.

(시행일 : 2004. 2. 27, 다만,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재조합 농산물 중 콩, 옥수수, 감자를 제외한 유전자재조합농산물은 2005년 2월 27일부터 적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중 개정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제 성분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39호, 2003. 9. 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사용되는 초산(Acetic acid), 염화암모늄(Ammonium chloride)등 유효성분 123종과 보조성분을 신규로 지정.

(시행일 : 2003. 9. 8)

**수입식품등검사지침중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45호, 2003. 9. 26)**

- 가. 시행규칙의 제11조제1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등 검사업무 처리시 유통관리대상 식품등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규정함(안 제4조).
- 나.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 동일사 동일식품 중 농·임산물이서류검사 대상에서 관능검사로 강화됨에 따라 “관능검사”로 용어를 정리함(안 제5조).
- 다. 수입식품등의 정밀검사를 위해항목 위주의 중점검사로 변경함(최초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안 제8조).

- 라.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수출국(또는 제조국)의 제조업자(수출업자 포함) 표시사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당해 식품 등의 신고서류를 반려 하여야 하나, 한글로 표시된 용기·포장으로 포장 하여 수입되는 식품등의 경우에는 반려 대상에서 제외함 (안 제10조제2항).
 - 마. 부적합된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 바. 허위서류 첨부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식품등과 반 송, 반출 등의 지시를 위반하는 수입신고인에 대하여 지방청장 및 검역 소장에게도 신속하게 그 사실을 통보토록함(안 제11조제4항).
 - 사. 수입식품등에 대한 품목별 중점검사항목을 변경함(안 별표1).
- (시행일 : 2003. 9. 26)

**전자문서에의한수입식품등의신고업무처리예관한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3-50호, 2003. 10. 24)**

- 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개정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수입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의「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수입신고 용어를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인터넷에 의한 수입신고 방식을 포함하는「전자문서」로 용어를 통일함 (안 제1조).
- 나. “공인인증서” 및 “공인인증기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다. 전자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기관을 서울·부산·경인지방청장에서 전 지방청으로 확대하고, 구비서류를 모사전송(FAX) 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하며, 전자 문서에 의한 업무처리 신청 및 승인을 위한 별지서식을 전자문서방식과 인터넷으로 구분함(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
- 라. 인터넷으로 식품등의 수입신고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을 받은 후 지방청장 또는 검역소장으로부터 아이디(ID)를 부여 받도록함(안 제3조제4항).
- 마.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 수수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신고인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으로부터 신고 수수료 지불 아이디(ID)를 부여 받도록함(안 제3조제5항).
- 바. 식품위생법령에 의거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식품등 수입신고 업무처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안 제5조제1항4호).

(시행일 : 2003. 10. 24 다만,이 고시 시행전에 수입신고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기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4호, 2003. 11. 20)

가. 검사기관의 구분(안 제3조)

- 법 제16조, 법 제17조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을 검사하는 기관(국가사무수입기관)
-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를 위탁받아 검사하는기관 (자가품질 검사위탁기관)

나. 검사기관 구비요건(안 제4조)

- 국가사무수입기관 : 바닥면적 400㎡이상, 검사원수 8명 이상
- 기계·장비 - 아황산염 증류장치 등 68종
- 자가품질검사위탁기관 : 바닥면적 250㎡이상, 검사원수 4명이상
- 기계·장비 - 자동천평 등 47종

다. 검사능력평가(안 제5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검사기관 지정전 검사능력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방법등은 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동평가결과 신뢰성·정확성 확보가 미흡한 기관에 대하여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지정·운영심의위원회(안 제6조 및 제7조)

- 구성 : 차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당연직 5인 : 공무원,
-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위원 중 5인 - 청장이 위촉)
- 임무 :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및 신뢰성 등 심의
- 의결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과반수 찬성

마. 지정 공고(안 제8조)

- 공고사항 : 업소의 명칭, 소재지, 검사대상식품등, 검사기관의 구분, 검사기관 지정 일 등

(시행일 : 2003. 11. 20)

(다른 고시의 폐지) 자가품질검사업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함.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6호, 2003. 12. 3)**

- 저감미제인 폴리글리시톨시럽, 충전제인 질소, 착향료인 카프릴산등 3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지정
 - 국제화추세에 따라 국제식품규격(codex), 미국, 일본, 등의 규격을 수용하여 리파아제 등 3품목의 균주추가에 따른 정의개정, 이소말트등 7개품목의 성분규격 및 스테아릴젯산나트륨 등 2품목의 사용기준 개정
 - “젤라틴”의 제조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제조기준을 신설함
- (시행일 : 2003. 12. 3, 고시 이전에 이미 접수된 민원서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식품첨가물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6호, 2003. 12. 2)**

- 가.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중 412.폴리 글리시톨시럽, 나. 천연첨가물중 191.질소, 192.카프릴산을 신규지정함.
- 나.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가. 화학적합성품중 113.스테 아.릴젯산나트륨, 114.스테아릴젯산칼슘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192.이소 말트, 210.제삼인산칼륨, 250. -카로틴, 320.황산아연, 355.말티톨시럽, 356.산화칼슘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 다. 식품첨가물공전 제2. 제조기준 중 ‘젤라틴’항을 신설함.
- 라. 식품첨가물공전 제4. 품목별 규격 및 기준 나. 천연첨가물중 20.리파아제, 86.폴루라나아제의 정의 및 성분규격을 개정하고, 157.천연착향료의 정의 및 159. 키토사나아제의 성분규격을 개정함.

**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개정(기구등의살균소독제 신설)
-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3-57호, 2003. 12. 8 -**

식품첨가물의 정의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살균·소독 목적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됨에 따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제품에 대하여 기준 및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자료의 범위, 작성요령, 제출자료의 면제 등 세부 규정을 정하고자 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주요내용

-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인정을 위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정함
- 나. 자료의 작성요령 정함
- 다. 제출자료의 면제 범위를 정함
- 라. 인정검토기준을 정함

의약품제조시설의식품제조가공시설이용기준 제정 고시

- 가. 의약품제조시설을 식품제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식품으로는 정제, 캡셀, 분말, 과립, 액상, 환의 형태로 제조·가공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중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되어 있는 식품첨가물과 한시적으로 인정한 식품첨가물로 한정함(제2조).
- 나. 생물학적제제, 항생·항균성제제, 성호르몬제제, 마약류, 방사성의약품, 주 사제, 연고제 기타 이에 준하는 의약품을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식품과 의약품의 상호전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소별 세척이나 소독 등에 관한 관리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지정기준을 마련함(제3조).
- 다. 의약품시설을 이용을 위한 지정 신청시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시설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영업소별로 의약품이 식품에 전이되지 아니하도록 전이방지를 위한 관리기준을 설정·작성하도록 하고, 그 관련서류를 제출 하도록 함(제4조).
- 라. 의약품시설을 이용을 함에 있어 전이방지 관리기준의 적정성 및 시설의 적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의약품전문가, 식품전문가, 학계,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등으로 구성(10명이내)된 안전성평가 위원회를 두도록 함(제5조).
- 마. 의약품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정한 때에는 그 업소명칭, 소재지,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품목 등에 대하여 관보,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도록 함(제6조).
- 바. 지정받은 영업자는 의약품시설을 이용하여 지정된 품목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가공시 마다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에게 보고하고, 영업자는 의약품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경우 그 제조시 마다 전이우려가 있는 의약품성분의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식약청장, 영업허가 또는 신고관청의 장은 유통중인 이들 제품에 대하여 수시 수거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제7조).

(시행일 :2004. 1. 1)



수삼 표준규격 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3 - 1 호, 2003. 3. 24 -

수삼의 품질향상과 공정거래 실현을 위한 등급규격과 유통효율성 제고 및 소비자정보 제공을 위해 포장규격에 대한 기준을 정함

- 등급규격의 적용범위, 품위기준에 관한 사항, 품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수삼의 크기구분에 관한 사항, 포장치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함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개정고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3- 1호, 2003. 3

- 가. 수입축산물신고시 서류검사 확인사항에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를 추가함 (제5조제1항제1호)
- 나. 수입신고시 허위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사실이 있는 자 등이 수입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건수기준으로 5회까지 연속정밀검사를 하도록 함(제12조제4항 신설)
- 다. 수입최소량의 기준을 정하여 수입최소량을 신고중량 기준 100kg으로 함 (제15조 신설)

인삼검사업무사후관리요령 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고시 제2003 - 4호, 2003.11.10)

인삼류(홍삼·태극삼·백삼)의 이화학 및 미생물 검사를 위한 모집단별 시료 채취기준, 점당 시료채취량, 채취방법 등 관련규정 신설

- 검사대상 모집단 편성

- 모집단별 시료 채취기준
- 점당 시료채취량
- 시료발취 및 채취방법

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 개정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2003-14호, 2003. 12. 17)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시행중인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국립수의과학검역원고시 제2002-3호, 2002.6.15.)"중 제5조(가공기준및성분규격)을 개정고시 하였다.

주요내용

- 가. 냉동축산물의 성분규격 삭제
- 나. 보존료시험법중 동시분석법(스크리닝검사법)을 신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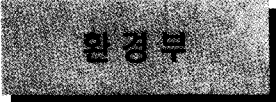
수출수산물 · 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해양수산부고시 제2003-34호, 2003. 6. 1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수산물 · 수산가공품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 대상국가 : 중화인민공화국(홍콩을 제외한다)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 검사대상품목 : 수출하는 수산물중 별표에 규정한 국가별 세부검사대상품목.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선박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수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비고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출입경검협검역국간 수출 · 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 품질검사원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수산부 국립수산물검사및품질보증센터간 수산물품질관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서

(시행일 : 2003. 6. 11)



200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3 - 21호, 2003. 1. 14)

환경부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
활용의무총량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하였다.

2003년도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 (단위 : 톤)

품 목		2001년 총출고량	2003년 의무총량
유리병		566,866	298,798
금속캔		216,350	180,000
종이팩		65,746	15,500
합성 수지 포장재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117,793	71,800
	발포폴리스티렌	18,942	10,100
	폴리스티렌페이퍼	11,871	2,000
	기타 합성수지	203,947	80,715

(시행일 : 2003. 1. 14)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 (환경부령 제 137 호, 2003. 4.)

□ 규칙 제3조(제품의 포장재질에 관한 기준)의 규정으로 PVC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을 확대

- PVC는 다이옥신 배출 등 환경에 영향이 크고, 다른 재질과 혼합 될 경우 재활용을 저해함에 따라 가정에서 주로 배출되는 포장재(계란·메추리알, 튀김식품·김밥류·햄버거류·샌드위치류 포장재)에 대하여 PVC 사용을 금지(2004. 1. 1부터)

□ 규칙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기준) 및 별표1이 규정으로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기준을 일부 조정

- 화장품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제 중 향수류는 제품특성을 고려하여 포장공간비율 적용 배제
- 제과류 중 데커레이션 케이크의 장식 등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이 변동됨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35% 이하로 완화
- 종합제품의 받침접시·포장완충재 재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을 가감하여 포장재의 환경친화적인 재질대체 유도
 - 받침접시·포장용완충재로 사용된 재질에 따라 포장공간비율25%를 기준으로 복합합성수지, PVC, 합성섬유 재질 사용시 -5%, 단일 합성수지재질 사용시 0%, 종이재질 사용시 +5%를 가감

□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대상품목별로 재질대체 현황과 이행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을 재설정

- 계란난좌 80% → 60%이상, 계란팩 80% → 35%이상, 사과·배 받침접시 60% → 15%이상, 농·축·수산부류 받침접시 60% → 10%이상, 면류용기 60% → 20%이상

□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포장용 완충재에 대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종전 일정비율(%)을 감량화 하도록 하던 것은 일정규모(포장용적)이하의 대하여 연차별로 EPS 재질의 사용을 금지토록 변경

- '04년 : 포장용적 2만㎤이하 제품, '06년 : 포장용적 3만㎤이하제품 '08년 : 포장용적 4만㎤이하 제품은 발포폴리스티렌 재질 포장용 완충재 사용금지

□ 규칙 제9조(포장재 연차별 줄이기의 예외)의 규정으로 연차별 줄이기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사유 등을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예외 규정 신설

□ 포장용기 재사용이 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리필용기 생산비율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

- 삼푸 · 린스류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25이상
- 물티스류 :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60이상
-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70이상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고시
(환경부고시 제2003 - 97호, 2003. 6. 3)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4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금속캔 및 폐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회수하여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으로 고시.

재활용 실적인정 및 실적조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부예규 제 2003 - 235호, 2003.12.12)

제1조(목적)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별표 4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및 포장재의 재활용 실적조사 및 실적인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 재활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생산자(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수탁자(재활용의무생산자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제3조(재활용 실적인정 제품 · 포장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 의무총량이 고시

된 제품·포장재별로 재활용실적을 인정한다.

제4조(재활용 실적인정 자료) 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는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가.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실적에 관한 자료

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준수방법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납품자료, 생산·수출실적 등을 말하다)

제5조(재활용 실적인정 기준 등) ①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제품·포장재의 재활용 실적 인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재활용의무대상이외의 품목, 이물질, 수분 등은 실제 중량에서 제외한다.

1. 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과 기준에 적합한 시설에 투입한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의 실제 중량(형광등의 경우에는 갯수)
2. 재활용 또는 재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한 품목의 실제 중량
3. 재활용의무대상품목을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재사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4. 그밖의 재활용 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경우에는 그 재사용 또는 재활용한 품목의 실제 중량 또는 갯수

②재활용 실적인정 기준일은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수탁자가 규칙 제13조의 방법과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한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재활용 실적조사 등) ①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영 제29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직원 등으로 하여금 재활용 실적인정 대상자의 재활용실적 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별 조사방법, 조사 횟수, 조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 중량의 산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중개정
(환경부고시 제2003-213호, 2003. 12. 17)**

분리배출표시에관한지침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중 “표시를 하지 않는 포장재”를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로 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외포장재가 완전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는 제품중 내포장재에 분리배출 표시를 하는 경우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재질명 등을 외포장재에 일괄표시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표시대상 제품·포장재에 대한 적용례) 2003년12월31일까지 제조되는 제품·포장재 또는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제품·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아니할 수 있다.

**2004년도제품·포장배별재활용의무총량
(환경부고시제2003-219호, 2003. 12. 30)**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에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하여야 하는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무총량을 결정·고시하였다.

2004년도제품 · 포장배별재활용의무총량

(단위 : 톤)

품 목		2002년도총출고량	2004년의무총량
금 속 캔		235,250	172,000
유 리 병		504,827	313,284
종 이 팩		70,448	20730
합성수지포장재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114,660	83,114
	발포폴리스티렌	19,615	11,063
	폴리스티렌페이퍼	12,680	2,585
	폴리비닐클로라이드	3,969	1,878
기타합성수지	단일재질	146,133	70,614
	복합재질	73,602	20,726

(시행일 : 2004. 1. 1)